

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 · 피한정후견인 · 피특정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
-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
-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
- 채용전 파렴치 범죄,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,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
 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